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

제정 2020. 3. 25 규칙 제122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,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일괄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순화 등) 광명시 규칙의 본문, 별표, 별지서식 중 어려운 한자어 및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용어의 순화 등(제2조 관련)

□ 어려운 한자어

연번	부서명	자치법규명	조·항·호·목	조문내용	현 행	개 정
1	총무과	광명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	제13조제1항	제13조(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)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.	미연에	미리
2	도시계획과	광명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	제118조제1항	제118조(소요산정)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,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. 다만, 특수 자재 또는 가격앙등의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사업 연도 말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.	가격앙등의, 자재에 대하여는	가격이 오를 것이, 자재는
3	수도과	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	제86조제1항	제86조(소요산정)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, 2분기분 이상을 일시구입할 수 없다. 다만, 특수자재 또는 가격 앙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구입할 수 있다.	가격 앙등이	가격이 오를 것이
4	도시개발과	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	제14조	제14조(배할선의 기준)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, 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.	폭원	너비
5	수도과	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	제12조제1항	제12조(장부의 오기정정)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,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.	해득	이해

□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

연번	부서명	자치법규명	조·항·호·목	조문본문	현 행	개 정
1	감사담당관	광명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	제2조제1호나목	제2조(정의) 1. 나. 개선권고: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·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·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	전부에 대하여 수정·보완 또는 삭제 등의	전부를 수정·보완 또는 삭제하는 등의
2	자치분권과	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	제8조제1항	제8조(결산)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지출내역에 대하여	지출내역을
3	자치분권과	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	제11조의2제2항	제11조의2(선정위원회 구성) ② 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날부터 위촉대상자를 선정한 날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1회에 한하여	한 번만
4	자치분권과	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14호서식	1.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	사용함에 있어	사용할 경우
5	자치분권과	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	제1조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6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제1조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광명시의 공용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관리에 관하여	관리에
7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제9조제2항	제9조(차량의 등록절차)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(이하 “등록”이라 한다)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.	함에 있어서	하는 경우
8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제17조제2항	제17조(공용차량의 관리방법)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로 지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.	제2관리부서로 지정된 차량에 대하여는	제2관리부서가 지정된 차량은
9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제37조	제37조(검토) 단위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인솔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	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	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

10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제39조제1항	제39조(이용자 등의 의무) 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	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	발생하는 사항은
11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별표2 제2호 나목	2.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나. 기타기관 :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	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	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
12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별표2 제4호	4. 시본청과 환경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	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	처리하는 기관에
13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별지 제3호 서식	첨부 : 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	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	차량교환이 필요한
14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별지 제13호 서식	행선지 및 경유지	행선지	목적지
15	회계과	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	별지 제13호 서식	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	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	차량지원이 필요한
16	문화관광과	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제1조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7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	제1조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8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1조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9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8조제2항	제8조(융자금의 관리) ②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·손실·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	자료에 대하여는	자료는
20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1조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21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4조	제4조(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)	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	대출업무 등 위탁협약

22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 4 조제 1 항 제 4 호	제 4 조(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) 4.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업무위탁에 관하여	업무위탁에
23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 6 조제 1 항 제 2 호	제 6 조(위원의 해촉 등) 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	장기치료를 요하는	장기치료가 필요한
24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 16 조제 1 항	제 16 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	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	지원받은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25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 17 조	제 17 조(세부사항)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	운용에 관하여	운용에
26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 3 호 서식	1.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,	융자받은 날로부터 2 월	융자받은 날부터 2 개월
27	하수과	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	제 1 조	제 1 조(목적)이 규칙은「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28	건강생활과	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제 3 조	제 3 조(계약)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대행업무의 범위, 계약기간, 업무대행경비, 업무대행자의 의무, 업무대행장소, 계약의 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기타	그 밖에